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77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8. 4.

발의자 : 설훈 · 강병원 · 기동민

김병기 · 김종민 · 김홍걸

민홍철 · 안규백 · 안민석

허종식 · 홍영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).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·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⑥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획 공표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 등 의 수립) ① ~ ④ (생 략)	제5조(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 등 의 수립) ① ~ ④ (현행과 같 음) <u>⑤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·평가하 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</u> <u>⑥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 다 만,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은 공표하지 아니한다.</u> <u>⑦ (현행 제5항과 같음)</u>
<u><신 설></u>	
⑤ (생 략)	